

※ 필수서류 : 1) 폐업사실증명원(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)  
 2) 매출 확인 서류(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)  
 3)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
 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(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)  
 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 
 ▲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, ▲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 
 ▲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, ▲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 
 \* 단, '소상공인확인서'가 있는 경우는 2), 3)을 같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

구분	대상 유형	제출서류	방법
① 추가 자료 확인·검증 필요	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	(필수) 통합위임장	온라인 첨부
	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중소기업협동조합 *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,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·사업 협동조합	(필수) 인증서, 설립인가증 등 - 사회적기업인증서 - 협동조합·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- 사회적협동조합·연합회·이종협동 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- 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연합회·전국 연합회 설립인가증 -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·사업조합· 연합회 설립인가증	
	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	(필수)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(세무서 발급)	

구분	대상 유형	제출서류	방법
②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불가하여 타인 계좌 수령 희망	<b>①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</b> * 직계가족 수령을 원칙	<b>(필수)</b> 대리인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* 가족 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)	온라인 첨부
③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 신고	<b>① '20년~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부재(0원)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</b> ※ 매입세액, 사회보험료 지출내역, 공과금 지출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※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,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	<b>&lt; 매입세액 &gt;</b> <b>(필수)</b> ▲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▲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▲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1 <b>&lt;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&gt;</b> <b>(필수)</b> '20~폐업전까지 ▲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또는 내역), ▲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▲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중 택 1 <b>&lt; 공과금 지출내역 &gt;</b> <b>(필수)</b> 주민등록등본 <b>(필수)</b> '20~폐업전까지 폐업사실증명원상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▲전기요금, ▲수도요금, ▲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	온라인 첨부

※ (③-① 유형) '20년~ 폐업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
매입세액	· 부가세과세표준증명(매입세액으로 현금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) · 부가세 확정신고서(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) ·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
사회보험료 지출내역 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	· '20~폐업전까지 ▲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(또는 내역), ▲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▲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중 택 1
공과금 지출내역	· '20~폐업전까지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의 ▲전기요금, ▲수도요금, ▲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

- \*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
- \*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,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(「소득세법」 제33조제1항제5호 준용)
- \*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